송면초등학교 학교 규칙

(2010. 2. 12. 제정)
(2011. 4. 22. 개정)
(2012. 2. 17. 개정)
(2012. 8. 20. 개정)
(2015. 7. 09. 개정)
(2016. 2. 16.개정)
(2017. 7. 17.개정)
(2018. 7. 17.개정)
(2020. 2.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교는 "송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2길 13로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생의 진급,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③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4월 8일)
3. 토요휴업일
4.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통한 휴가는 법정수업 일수 190일(주5일 수업에 따른 감축 수업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다.

② 제 1항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 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 및 수료·졸업

제9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② 1항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학교보건법 제7조, 8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1,2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결석
2.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결석
3. 전.출입, 교환.체험학습, 가족 및 친인척 경조사 등으로 인한 결석

제11조【수업시간】

① 수업은 40분 단위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 통합.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인근 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방과후학교】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하여 방과후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방과후 교육 내용 및 강사 선정, 시간, 강사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시한다.

제13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모든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수행과정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6조【명예졸업】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수업연한이 경과하지 않아서 소정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자나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학교장이 명예졸업을 인정하고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제17조【정의】

① 조기진급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 가능함(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를 말한다.

② 조기졸업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

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가능함)를 말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은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상급학교에 조기입학 자격을 받은 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제18조【절차】

①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②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

③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

1.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함

2.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3.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4.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④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⑤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제1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가. 학교자체의 조기졸업 등을 목적으로 한 지능 검사 지양

나. 공인된 상담(검사) 자격 소지자에 의해 서로 다른 표준화된 검사지로 실시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검사 결과만 인정

다. 서로 다른 검사결과 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차 유지(지능검사지에 대한 학습 효과 방지)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①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제23조의 규정 등의 재·전·편입학 전학 및 재입학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 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사위원은 교무부장, 해당학년 담임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학부모회 추천으로 2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여러 문제 협의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6 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취학

제21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22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학.편입학.재취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 의하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항 및 제 3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⑤ 편입학은 유예 및 면제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서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편입학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유예, 면제】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청,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28조 1항)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5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5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정원 외 학적 관리중인 학생이 귀국하여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고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를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 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

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 서류는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 7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27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28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부모 부담금 징수

제29조【부담금 징수】

급식비, 방과후교육비 등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제30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학교장 포상내규를 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전교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교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현장학습,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33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11 장 학생희롱, 성폭력 및 남녀차별 방지

제34조【양성평등교육】

학교장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성폭력 및 남녀차별 방지 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제 12 장 체험학습

제35조【교외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 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1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36조(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7조(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④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제 13 장 학교생활규정, 징계

제38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인 학교생활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18조 및 시행령 31조)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학교의 특별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의 무단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⑥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송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제시된 방법으로 한다.

⑦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심의한다.

제40조【훈육.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 방

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2항)
② 본교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8항)

제41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헌장을 따른다.
1.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학생은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 등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이탈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43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개성 실현의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1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학생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7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48조【학생 생활 규정】

학생은 송면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장 학칙 개정 절차

제49조【학칙 개정】

① 학칙은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개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개정된 학칙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포한다.

④ 학칙 제·개정 위원회는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원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0조【의견 수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장 교권 보호

제51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2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53조(송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송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송면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송면초등학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2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제 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